

# 檢 討 報 報 書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7. 9. 12

3. 提案理由

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·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 하고,
- 상환방법은 5년 거치, 15년 채증상환토록 규정함.  
(안 제9조제3항제1호가목).

5. 關聯法規

-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
-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(융자금의 금리와 기간)

## 6. 檢討意見

-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·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,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됨.